

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성 북 구
(보건위생과)

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연도 : 2001년
- 2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9조
- 3)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증진

※ 재원구성 : 보조금, 과장금 징수교부금, 이자수입

4) 사업내용

-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교육·홍보
- 조사·연구사업, 음식문화개선, 식중독 예방사업
-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용자

<시설개선 용자 사업>

- 용자규모 : 2억원
- 용자대상 : 관내 일반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식품제조업소 등
- 용자 및 상환조건(이율 추후 심의)
 - 시설개선자금 :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, 소요자금의 80%, 1억원 이하
 - 확장설개선자금 :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, 소요자금의 80%, 2천만원 이하

나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 사유

○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(사업비 잔액정산)

-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

2)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

○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

(단위 : 천원)

' 20년도말 조성액(가)	' 21년도 증감액			' 21년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계 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
922,110	△1,294	54,537	55,831	920,816

○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
기금 총 운용액	766,768	1,008,000	241,232

- 2021년 기정예산 766,768천원에서 1,008,000천원으로 증액 편성
- 당초 예치금 679,583천원에서 920,815천원으로 증액 편성

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766,768	1,008,000	241,232	
보 조 금	24,000	24,000	-	
예치금회수	679,583	920,815	241,232	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
이자수입	14,385	14,385	-	
기타수입	48,800	48,800	-	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-편성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766,768	1,008,000		
비용자성사업비	126,820	126,820		
융자성사업비	200,000	200,000		
예치금	430,772	672,004	241,232	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
기타지출	9,176	9,176		

4) 2022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조성액		사용액		2022년말 조성액 (잔액)
1,008,000		135,996		672,004
보조금 24,000	-	비용자성사업비 126,820	=	· 2023년도 이월(예치금)
예치금회수 920,815		융자성사업비 200,000		
이자수입 14,385		기타지출 9,176		
기타수입 48,800				

3. 관련근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